

-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소통의 도시 •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 •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
-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 •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도시 •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



연수구보

■ 구정 방향 ■

함께 가꿔요!

행복한 연수!

발행·편집인:연수구청장 / 발행처:인천광역시 연수구 / 주소: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(우)406-120 ☎ 810-7072 / FAX 810-7139

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부록 제620호 2011. 3. 7.(월)

【고 시】

-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1-7호(인천도시계획시설(도로:소2-31호선) 실시계획인가 고시)
..... 1

【공 고】

-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1-202호(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) 4
-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1-213호(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(안) 입법예고) 5

회							
람							

인천도시계획시설(도로:소2-31호선) 실시계획인가 고시

인천도시계획시설 【도로:소2-31호선】 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되었기에 「같은법」 제91조, 「동법 시행령」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연수구청 건설과(☎810-7401) 및 도시계획과(☎810-7467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.

2011. 3. 7.

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

1. 사업 시행지의 위치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471-1번지 일원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- 종 류 : 인천도시계획시설 (도로 : 소2-31호선)
 - 명 칭 : 문학공원(장미원지구) 진입도로 확장공사
3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
 - 규 모 : 연장(L)=186m, 폭원(B)=10m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성 명 :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
 - 주 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
5.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
 - 착수(예정)일 : 실시계획인가일
 - 준공(예정)일 : 2011. 12.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반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
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

○ 『붙임』 참조

7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9조의 규정에 의한
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【해당없음】

『붙임』

일련 번호	소재지	지 번	지 목	공부 면적	편입면적			잔여 면적	소유자		관계인		비 고
					도로내	도로외	계		주소	성 명	주소	성 명	
1	연수동	641	도	52,523.6	124		124	52399.6		인천광역시			
2		478-3	잡	319.3	319.3		319.3	-		인천광역시 연수구			
3		478	잡	6,499.9		217.5	217.5	6282.4		인천광역시 연수구			
4		641-2	도	3,200.9	135.8		135.8	3065.1		인천광역시 연수구			
5		471-14	잡	6,431.1		147	147	6284.1		인천광역시			
6		641-6	도	36.4	36.4		36.4	-		인천광역시 연수구			
7		471-18	잡	7.2	7.2		7.2	-		인천광역시			
8		471-1	잡	521.2		428	428	93.2		인천광역시			
9		471-16	잡	452.1	452.1		452.1	-		인천광역시			
10		산61-24	임	1,882	0	73	73	1809.0	인천광역시 주안동 1492-12	이원실 외7인	옥련동327-59 주안동1492-12 주안동1492-12 주안동1492-12 주안동1492-12 주안동1492-12 용현동627-79대립5동904호	유석룡 권경희 이형무 이형주 이형임 이형선 송필분	지분14/42 지분3/42 지분3/42 지분2/42 지분2/42 지분2/42 지분1/3
11		산61-31	임	107	0	55	55	52.0	안양시 비산동 354-10 뉴타운 3동201호	정성택 외2인	순천시교량동775-1 서울관악구신림동1706신림2차금호201-1604	정호택 김성희	지분4/11 지분1/11
12		471-15	잡	5.7		5.7	5.7	-		인천광역시			
13		137-5	전	19		10	10	9.0	서울 강남구 논현동 71-2	한국토지개발공사			
14		산61-39	임	97	97	0	97	-	안양시 비산동 354-10 뉴타운 3동201호	정성택 외2인	순천시교량동775-1 서울관악구신림동1706신림2차금호201-1604	정호택 김성희	지분4/11 지분1/11
15		산61-33	임	4,947	0	162	162	4785.0	안양시 비산동 354-10 뉴타운 3동201호	정성택 외2인	순천시교량동775-1 서울관악구신림동1706신림2차금호201-1604	정호택 김성희	지분4/11 지분1/11
16		산61-1	공	50,686		70	70	50616.0		인천광역시			
17		137-3	공	9,354		152	152	9202.0		인천광역시			
18		478-1	도	232.9	211		211	21.9		인천광역시 연수구			
19		640-15	도	523.4	523.4		523.4	-		인천광역시 연수구			
20		471-17	도	226.6	226.6		226.6	-		인천광역시 연수구			
계				138,072.3	2,132.8	1,320.2	3,453.0	134,619.3					

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

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11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아래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인터넷 홈페이지, 세무과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·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열 랐

- 기 간 : 2011년 3월 4일 ~ 3월 25일
- 장 소 : 시 홈페이지 또는 개별주택 소재지 군·구 홈페이지 및 세무과
- 열람내용 : 개별주택가격(토지·건물 일체가격)

○ 의견제출

- 기 간 : 2011년 3월 4일 ~ 3월 25일
- 제출사항 : 용도지역 및 주택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
- 제 출 자 :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
- 제 출 처 : 주택소재지 군·구 세무과
- 제출방법 : 시 및 군·구 인터넷 홈페이지, 군·구 세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

○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

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

2011. 3. 4.

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

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11- 213호

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1년 3월 7일

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

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「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」의 개정에 따라 당직수당 규정을 신설하고 주5일 근무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주5일 근무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
- 당직수당 규정 신설

3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8일(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(참조:총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, 성명[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(법인명)과 그 대표자 성명] 및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

- 주 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(동춘동 923-5번지)
- 연 락 처 : 전화 810-7093, FAX 810-7109
- 홈페이지 : <http://www.yeonsu.go.kr/>

4. 참고자료

-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(안)

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(안)

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일직은 공휴일에 두며, 그 근무시간은 토요일이 아닌” 을 “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, 그 근무시간은” 으로 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당직수당)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1인 1회당 50,000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. 다만 일직 및 토요일과 공휴일 전일 숙직근무자의 당직수당은 70,000원으로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당직의 구분) ①생략 ②일직은 공휴일에 두며, 그 근무시 간은 토요일이 아닌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.	제4조(당직의 구분) ①현행과 같음 ②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,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 간에 준한다.
<신설>	제4조의2(당직수당) 당직근무자에게 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1인 1회당 50,000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. 다만 일직 및 토요일과 공휴일 전일 숙직 근무자의 당직수당은 70,000원으로 한다.

검 토 의 건 서

관련부서	총무과		
의안명칭	「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」 일부개정(안)		
검토사항	검 토 내 용	유	무
	1. 관계법령에 위배여부 2. 조례·규칙·훈령·예규등 위배여부 3. 예산수반 협의 4. 주민의 권리 및 이익 침해 여부 5. 기타 문제점		
검 토 의 건			